

# 예 산 총 칙

2004 년도 [1 회추경]

\* 제1조 : 2004 년도 세입 · 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회 계 별	세입 · 세출 예산 총액	일 시 차 입 한 도 액
총 계	557,290,000	16,718,700
일 반 회 계	477,600,000	14,328,000
특 별 회 계	79,690,000	2,390,70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9,530,000	285,900
주택사업특별회계	3,798,000	113,940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10,471,000	314,130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1,760,000	52,800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2,401,000	72,030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2,697,000	80,910
치수사업특별회계	865,000	25,950
저소득주민주거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	1,407,000	42,210
농공지구관리특별회계	708,000	21,240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	12,272,000	368,160
청소사업특별회계	33,781,000	1,013,430

※상수도(공기업)사업 특별회계 : 36,040,000천원

제2조 세입 · 세출예산의 명세는 "세입 · 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2004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6,000백만원으로 한다.

제4조 2004년도 사고이월사업은 별첨 "사고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548,816천원으로 한다.

제7조 지방재정법 제38조 단서규정에 의한 다음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1. 공무원 기본급 및 수당, 기타직 공무원의 보수
2.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복리후생비, 직급보조비

3. 배상금, 국선변호료, 법정보상금
4. 지방채원리금과 금리변동으로 인한 이자지출 경비
5. 재해대책비
6. 반환금
7. 선거관련경비